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166 호 2019. 3. 21.(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44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47호[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48호[공유수면 점용·사용 연장(변경)허가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50호[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52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9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331호[소하천 기간연장허가 공고]..... 3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345호[소하천 점용·기간연장허가 공고]..... 32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4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허가 연월일 : 2019. 3. 14.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진출입로 개설(BOX(2.0*1.5), L=4m, 콘크리트 포장 A=14m²)]
3. 점용·사용의 장소 : 신현동 958-54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9m²
 - 나. 기 간 - 2019. 03. 18. ~ 2023. 0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백봉자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2로 43, 105동 290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47호

하천 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내 용	하천 점용·사용 허가기간 연장
점용자	(주)현대자동차 외 2
점용기간	2019. 1. 1. ~ 2023. 12. 31.(5년)

신청인	주소	점용위치	번지	점용면적 (m ²)	점용목적
(주)현대자동차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양정동	710-2번 지 외 35필지	22,000	공장부지 등
한국전력공사	울산광역시 북구 명춘23길 8	화봉동	995-5번 지 외 13필지	6.169	전주설치
이 종 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4길 20, 108동 402호	어물동	1240-1	869	경 작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4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연장(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6항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내 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 연장
점용자	(주)현대자동차 외 1
점용기간	2019. 1. 1. ~ 2023. 5. 31.(5년)

신청인	주소	점용위치	번지	점용면적 (㎡)	점용목적
(주)현대자동차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염포동	261-5번지 외 19필지	13,093	공장부지 등
한국전력공사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3길 8	어물동	1240-77번지	1	전주설치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5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3-38호선, 대3-42호선, 중2-549호선 및 녹지(592))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나. 명칭: 북구 중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3-42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및 녹지 592 조성공사] 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7-1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도로: 13,417㎡, 녹지: 2,556㎡

가. 도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대로	3	38	25~32	보조간선 도로	890 (278)	광3-3	대3-41	도로확폭개설 (B=13m→25m, L=323m)
대로	3	42	25	보조간선 도로	1,312 (323)	대2-18	대2-31	도로반폭개설 (B=12.5m, L=278m)
중로	2	549	15~18	집산도로	342 (342)	대3-38	중1-314	노선신설 (B=18m, L=342m)

나.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592	녹지	북구 중산동 81-4일원	2,556.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차기환

나. 주소 : 울산 북구 신천로 55-21, 3층 301호 신천하람타운(신천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1. 1.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참조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도시계획시설 및 붙임 명세의 토지 및 설치되는 도로시설물 등 제반 시설은 준공 전 소유권을 해당관리청으로 이전하여야 함.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중산동	57-1	답	192.0	19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2	중산동	58-1	전	32.0	3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3	중산동	60.0	답	50.0	5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4	중산동	61-5	전	2.0	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5	중산동	61-10	전	76.0	7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6	중산동	61-11	전	61.0	6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7	중산동	62-1	대	39.0	3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8	중산동	63-4	답	200.0	200.0	정○칠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9	중산동	63-5	답	11.0	1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10	중산동	63-13	답	228.0	22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11	중산동	63-14	답	3.0	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12	중산동	63-15	답	394.0	394.0	정○칠	울산 남구 달동				
13	중산동	63-16	답	8.0	8.0	주식회사 에코리얼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92, 701동 303호				
14	중산동	63-20	답	299.0	29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15	중산동	77-1	과	3.0	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16	중산동	78-2	과	1.0	1.0	이○희 외 1인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울산축산업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22 (신정동)	지상권	
17	중산동	78-3	과	450.0	45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18	중산동	78-4	과	364.0	36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2)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9	중산동	81-3	답	582.0	582.0	최○동	울산 동구 방어동 문현지구				
20	중산동	81-4	답	279.0	279.0	최○동	울산 동구 방어동 문현지구				
21	중산동	81-5	답	100.0	10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22	중산동	82-5	도	68.0	68.0	최○석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소면				
23	중산동	82-6	도	48.0	48.0	최○석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소면				
24	중산동	82-8	답	45.0	4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25	중산동	82-9	답	18.0	1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26	중산동	82-10	답	60.0	6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27	중산동	82-11	답	84.0	8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28	중산동	83-3	대	125.0	125.0	박○복	울주군 농소면 중산리				
29	중산동	83-7	대	272.0	272.0	박○복	울주군 농소면 중산리				
30	중산동	83-8	대	183.0	183.0	박○복	울주군 농소면 중산리				
31	중산동	83-10	대	70.0	7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32	중산동	83-11	대	105.0	105.0	박○복	울주군 농소면 중산리				
33	중산동	83-13	대	26.0	26.0	박○철	울산시 울주군 농소읍 중산리				
34	중산동	86-6	전	90.0	9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35	중산동	86-9	전	267.0	26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36	중산동	86-10	전	27.0	2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3)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37	중산동	86-11	전	108.0	10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38	중산동	86-12	전	202.0	20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39	중산동	86-14	전	1.0	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40	중산동	87-3	도	37.0	3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41	중산동	87-4	도	40.0	4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42	중산동	87-6	전	139.0	13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43	중산동	87-7	전	90.0	9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44	중산동	88-7	과	40.0	4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45	중산동	88-16	과	9.0	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46	중산동	88-17	대	34.0	34.0	명의인없음	울산군 농소면 중산리 88-5 다세대주택 에이동,비이동				
47	중산동	88-19	도	10.0	1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48	중산동	94-6	임	254.0	25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외 1인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49	중산동	94-7	임	116.0	11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외 1인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50	중산동	94-9	도	1.0	1.0	송○훈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51	중산동	95	대	69.0	6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52	중산동	95-1	대	121.0	12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53	중산동	96-31	과	2.0	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54	중산동	1185-1 6	도	30.0	30.0	농림축산 식품부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4)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55	중산동	1185-1 7	도	24.0	24.0	농림축산 식품부					
56	중산동	1185-1 9	도	16.0	16.0	농림축산 식품부					
57	중산동	1185-2 0	도	26.0	26.0	농림축산 식품부					
58	중산동	1185-2 2	도	27.0	27.0	농림축산 식품부					
59	중산동	1185-2 3	도	21.0	21.0	농림축산 식품부					
60	중산동	1185-2 4	도	73.0	73.0	농림축산 식품부					
61	중산동	1186-2 0	구	33.0	33.0	농림축산 식품부					
62	중산동	1186-2 1	구	37.0	37.0	농림축산 식품부					
63	중산동	1186-2 3	구	52.0	52.0	농림축산 식품부					
64	매곡동	470-10	답	41.0	41.0	김○옥 외 2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5	매곡동	471-8	전	356.0	35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66	매곡동	471-10	답	136.0	13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67	매곡동	471-11	전	1.0	1.0	문○용 외 1인	울산 남구 신북로72번길				
68	매곡동	471-12	전	226.0	22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69	매곡동	472-6	답	8.0	8.0	권○용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31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근저당권	
70	매곡동	479.0	유	4,082.0	3.0	농림축산 식품부					
71	매곡동	479-1	유	97.0	97.0	농림축산 식품부					
72	매곡동	480-4	답	232.0	232.0	황○길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농소농업 협동조합	울산 북구 호계3길 4 (호계동)	근저당권/ 지상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5)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73	매곡동	480-5	과	803.0	80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74	매곡동	481-4	전	79.0	7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75	매곡동	481-5	전	640.0	64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76	매곡동	481-8	전	356.0	35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77	매곡동	482-4	전	260.0	26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78	매곡동	482-5	전	92.0	9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79	매곡동	482-6	전	226.0	226.0	정○동 외 1인	울산 북구 천곡동 408	병영농업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452-9	근저당권/ 지상권	
80	매곡동	482-7	전	7.0	7.0	정○동 외 1인	울산 북구 천곡동 408	병영농업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452-9	근저당권/ 지상권	
81	매곡동	483-2	전	14.0	14.0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75 (계동)				
82	매곡동	483-8	전	78.0	7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83	매곡동	483-9	도	97.0	90.0	울산광역시					
84	매곡동	483-10	전	55.0	5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85	매곡동	483-11	전	557.0	232.0	한○구 외 2인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 11길				
86	매곡동	483-12	전	24.0	24.0	이○옥 외 1인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94				
87	매곡동	483-18	전	144.0	144.0	한○구 외 3인	울산시 동구 전하동				
88	매곡동	483-19	전	51.0	51.0	한○구 외 3인	울산시 동구 전하동				
89	매곡동	483-20	전	19.0	19.0	한○구 외 3인	울산시 동구 전하동				
90	매곡동	483-22	전	2.0	2.0	한○구 외 3인	울산시 동구 전하동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6)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91	매곡동	483-23	전	11.0	1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92	매곡동	483-24	전	14.0	1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93	매곡동	483-25	전	156.0	15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94	매곡동	483-27	전	31.0	3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95	매곡동	483-29	전	6.0	6.0	한○구 외 2인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 11길				
96	매곡동	483-30	전	5.0	5.0	한○구 외 2인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 11길				
97	매곡동	484-1	답	250.0	25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제이제이지 제삼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2호	근저당권	
98	매곡동	485-1	답	501.0	118.0	안○석	울산시 성남동 51				
99	매곡동	485-2	답	264.0	264.0	엄○숙	울산 중구 반구동 742	울산축산업 협동조합	울산 남구 신정동 718-2	근저당권/ 지상권	
100	매곡동	485-9	도	2,639.0	1,226.0	울산광역시					
101	매곡동	485-14	답	78.0	78.0	안○석	울산시 성남동 51				
102	매곡동	485-15	답	323.0	323.0	엄○숙	울산 중구 반구동 742	울산축산업 협동조합	울산 남구 신정동 718-2	근저당권/ 지상권	
103	매곡동	485-17	답	129.0	129.0	엄○숙	울산 중구 반구동 742	울산축산업 협동조합	울산 남구 신정동 718-2	근저당권/ 지상권	
104	매곡동	496-11	답	143.0	14.0	울산광역시					
105	매곡동	496-13	답	117.0	12.0	울산광역시					
106	매곡동	497-2	답	306.0	117.0	울산광역시					
107	매곡동	497-3	답	15.0	15.0	최○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5				
108	매곡동	498-1	도	2,386.0	732.0	울산광역시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7)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09	매곡동	499-7	답	950.0	447.0	이○춘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568	웅상새마을금고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531-9	근저당권/지상권	
110	매곡동	500.0	답	7.0	7.0	울산광역시					
111	매곡동	500-1	답	436.0	232.0	백○승	울산 북구 중산동 622				
112	매곡동	500-2	답	58.0	58.0	한○옥	울산시 남구 야음동				
113	매곡동	826-17	구	489.0	150.0	농림축산 식품부					
114	매곡동	826-41	구	70.0	70.0	농림축산 식품부					
115	매곡동	826-43	구	34.0	34.0	농림축산 식품부					
116	매곡동	826-45	구	158.0	158.0	농림축산 식품부					
117	매곡동	832-1	도	56.0	36.0	농림축산 식품부					
118	매곡동	832-2	도	34.0	34.0	농림축산 식품부					
119	매곡동	832-14	도	58.0	58.0	농림축산 식품부					
120	매곡동	832-15	도	52.0	52.0	농림축산 식품부					
121	매곡동	832-17	도	41.0	41.0	농림축산 식품부					
122	매곡동	832-19	도	23.0	23.0	농림축산 식품부					
123	매곡동	833.0	도	685.0	172.0	농림축산 식품부					
124	매곡동	833-4	도	164.0	124.0	농림축산 식품부					
125	매곡동	833-15	도	30.0	30.0	농림축산 식품부					
합 계				25,876.0	15,973.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서

사업시행지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7-1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북구 중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3-42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및 녹지 592 조성공사] 사업]								
사업개요	가. 도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대로	3	38	25~32	보조간선 도로	890 (278)	광3-3	대3-41	도로확폭개설 (B=13m→25m, L=323m)
	대로	3	42	25	보조간선 도로	1,312 (323)	대2-18	대2-31	도로반폭개설 (B=12.5m, L=278m)
	중로	2	549	15~18	집산도로	342 (342)	대3-38	중1-314	노선신설 (B=18m, L=342m)
	나.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592	녹지	북구 중산동 81-4일원	2,556.0	-			
사업시행자	주 소	울산 북구 신천로 55-21, 3층 301호 신천하람타운(신천동)							
	성 명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차기환							
사업기간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 3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명세서	신청도서와 같음								
관계도서	신청도서와 같음								
인가조건	“붙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2019. 3. 21.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조건

1. 사업계획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중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변경협의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합니다.
2. 사업 착공 전 본 허가구역 내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실시 후 경계표석을 설치하여 공사시행하고, 공사안내 입간판 및 안전시설, 홍보간판 등을 설치하여 공사장 주변 통행인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3. 타 법령 이행사항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인·허가·승인 등 개별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추진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해소하여야 합니다. * 구조물 설치 등에 따른 인접 부지 사용시, 토지소유자와 협의할 것.
5.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시 진,출입로 단절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로 2-549호선과 기존 도로(약수 2길)와의 연결 검토할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후 당해 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기부채납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7.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접 도로의 피해(균열, 지반침하 등)발생 및 공사장 소음, 분진, 공사차량 운행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책임 하에 민원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8. 공사착공 전 반드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에는 예정공정표 등을 첨부하여 공사진행 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부서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9. 통행인의 안전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하고, 금회 공사로 인한 인·물적 피해가 발생될 시에는 피허가자가 책임하에 해결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시에는 7일 이내 준공도서, 설계도서, 지적측량

현황, 성과도 공종별 공사추진 현황사진(전·중·후) 등이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전산파일 포함)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시설물 이관 및 도시계획시설 적정여부에 대하여 준공 협의하여야 합니다.

11. 준공 절차 이행 전 확정측량을 시행하고 측량결과를 반영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이행보증금 522백만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규정에 의거 보증서(보증기간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기간+6개월)로 예치하고 해당 증빙 서류를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산출기준 : 총공사비(2,610백만원×20%)

13.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 문서번호 제2019-7호(2019.02.21.)의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붙임의 [관련부서 협의조건]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부서 협의조건]

1. 시 건설도로과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가로등, 교통신호기, 도로표지 등 도로변 설치되는 지주형 시설물은 지주 난립으로 도로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통합지주를 설치할 것.
- 교차로 구간 등에 설치되는 도로표지가 가로수로 인하여 시인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가로수 식재할 것.
-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도로표지 문안(원거리, 근거리) 및 설치 위치에 대하여 도로관리청과 반드시 사전협의할 것.

2. 시 교통정책과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포장계획평면도에는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 내용에 따라 북측 중로1-314호선의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계획을 반영하기 바람.
- 향후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울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변경이 있을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변경심의 또는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
-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바람

3. 시 녹지공원과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분야]

- 제출된 조치계획서 및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에 적합하게 식재할 것
- 식수대는 빗물침투가 가능한 생태형 가로수 보호판으로 변경 검토(시공 전 최종협의)

[완충녹지 분야]

- 당초 협의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녹지의 설치기준)의 규정에 적합하게 조성할 것
- 녹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시설물(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공공시설물, 옹벽, 전기·가스공급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음.

4. 시 농축산과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의 2(도시, 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49조의 3 (도시관리계획의 협의)규정에 따라 조달청(국유재산관리과)에 사전협의 한 결과, 무상귀속 대상 아님을 통보 (조달청 국유재산과-5843, 2018.12.18.).

5. 시 문화예술과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부지 중 북구 매곡동 483-2번지 일원의 변경(증가)된 부지(면적 1,797㎡)를 포함하여 2015년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보존조치를 통보받은 구간은 반드시 그 보존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북구 매곡동 485-1번지 일원의 변경(증가)된 일부 구간(면적 2,381㎡)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북구청장의 보호방안 검토를 거친 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시기 바람.

6. 시 종합건설본부와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유재산 무상귀속(양도) 검토

○ 무상귀속 검토결과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현황지목	공부면적 (㎡)	면적 (㎡)	관리청	검토결과	판단 사유
1	북구 매곡동	483-9	도로	도로 잡종지	97	90	울산 광역시	일부 무상	공공시설 및 비공공시설이 혼재된 필지로 분할 후 공공시설만 무상귀속 협의대상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보완 필요)
2	북구 매곡동	485-9	도로	도로	2,639	1,226	울산 광역시	무상 양도	공공시설에 해당되어 무상귀속(양도) 대상
3	북구 매곡동	496-11	답	도로 잡종지	143	14	울산 광역시	일부 무상	공공시설 및 비공공시설이 혼재된 필지로 분할 후 공공시설만 무상귀속 협의대상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보완 필요)
4	북구 매곡동	496-13	답	도로 잡종지	117	12	울산 광역시	일부 무상	공공시설 및 비공공시설이 혼재된 필지로 분할 후 공공시설만 무상귀속 협의대상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보완 필요)
5	북구 매곡동	497-2	답	잡종지	306	117	울산 광역시	유상 매입	공공시설에 미해당되어 무상귀속(양도) 비대상(유상매입 대상)
6	북구 매곡동	498-1	도로	도로 잡종지	2,386	732	울산 광역시	일부 무상	공공시설 및 비공공시설이 혼재된 필지로 분할 후 공공시설만 무상귀속 협의대상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보완 필요)
7	북구 매곡동	500	답	공원	7	7	울산 광역시	무상 양도	공공시설에 해당되어 무상귀속(양도)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과 비공공시설이 혼재된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지적현황측량성과도 첨부) 후 무상귀속 및 유상매입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

- 대3-38호선 반쪽개설 시 기 개설되어 공용 중인 도로(반쪽)를 포함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계획(차선계획, 교통안내표지 등)을 별도 수립하여 관계기관 및 우리부와 협의(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등)하여 주시기 바람.
- 대3-38호선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폭(도로표지, 가로수, 전주 등의 시설 폭 제외) 기준으로 분리형으로 조성하되 최소3.5m 이상(자전거 1.5m 이상, 보도 2.0m 이상)확보하고 자전거도로는 차도 측에 설치하여야 함.

- 도로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반규정(도로포장설계지침,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도로관리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준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제반 품질시험 관리기준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함.
- 개설 도로 노면은 3년(보도인 경우 2년)내 도로굴착이 불가함으로 도로 개설시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및 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병행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실시계획인가 협의 후 도로시설물 설치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개별법에 따라 심의 및 협의(의제)되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시계획인가 전 우리부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통행인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금회 공사로 인한 인적·물적(공공시설물 포함)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피허가자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허가청에서는 피해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지도·감독하여야 함.
- 보도정비구간은 울산광역시도 보도정비 개선방안에 부합되는 계획을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3) 사업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규정에 따라 준공 전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통지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및 토지합병 후 무상귀속하여야 함.
- 도로개설 완료 시에는 준공도서, 설계도서, 지적측량현황, 성과도 공종별 공사추진 현황사진(전·중·후) 등이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전산파일 포함)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물 이관 및 도시계획시설 적정여부에 대하여 사전 준공 협의하여야 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및 도로부속물(지하매설물 포함)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성과심사를 득한 후 우리시 도시정보시스템(UIS)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도로법 제56조 규정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상태, 각종시설물, 배수구조물 및 지하시설 등의 조서와 도면을 작성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하는 운영연계(HMS) 및 우리 시 도시정보시스템(UIS)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2017. 12.)에 따라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 하여 제출하여야 함.
- 완료공고 후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인수인계서(시설물 및 토지) 2부, 하자보증증권 1부, 및 준공검사 시 보완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준공도서를 우리본부로 제출하여야 함.

7. 시 하수관리과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과 같이 하수관로는 우·오수 분류식으로 설치하고, 하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구·군 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복구 건설과에 별도 협의하여야 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하수도는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우리시 하수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사업준공전까지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8. 시 회계과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북구 매곡동 483-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해 협의를 요청한 우리시 소유 공유재산 7필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해당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시기 바람.
- 편입시유지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재산관리관
				공부	편입	
계	7필지			5,695	2,198	
1	매곡동	483-9	도	97	90	종합건설본부
2	매곡동	485-9	도	2,639	1,226	
3	매곡동	496-11	답	143	14	
4	매곡동	496-13	답	117	12	
5	매곡동	497-2	답	306	117	
6	매곡동	498-1	도	2,386	732	
7	매곡동	500	답	7	7	

9. 북구 건설과와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로 관련 검토의견]

- 향후 중로2-549호선과 도시계획도로(소2-27호선 등 4개 노선)과의 접속(교차로형성)을 감안하여 영구구조물(역L형 옹벽) 설치의 지양하고 사면을 최대한 확보하여 인접부지와와의 단차를 최소화하시기 바람.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은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표준시방서와 제반 품질시험 관리기준에 부합되도록 시행하여야 함.
-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본 공사 시 설치되는 도로시설물에 대해 중·횡단 및 포장단면, 시설물도 등을 제작하고 대한측량협회의 성과심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편의시설(점자블록 등)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보도의 시·종점 및 횡단보도 설치지점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볼라드 설치 반영하시기 바람.
- 공사 시 변동사항 발생에 대해 도로관리 부서인 우리 과와 항시 협의하시기 바람.

[우·오수관로 관련 검토의견]

- 대3-42호선 도로 개설 시 오수관 부설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 대3-42호선 도로 개설에 따른 오수관 부설계획은 매곡중산지구 오수관로와 연결가능하도록 시·종점부 오수맨홀 심도를 고려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 기존하수맨홀 연결 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여야 하며, 맨홀내부로 관이돌출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매설관로는 CCTV조사 및 수밀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그 외 생략한 사항은 하수도시설기준에 입각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하고, 대한측량협회의 성과심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지하시설물도는 울산광역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울산광역시 도로기반시설물 통합 데이터 작성지침」에 의한 데이터베이스(DB) 설계를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재협의 후 사업진행 하여야 함.

[가로등 설치 관련 검토의견]

- 도로신설(개설) 부분에는 아래와 같이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배열방법	설치간격	설치높이	조 도	비 고
소방도로	편 측	40~ 50m	5 ~ 6m	도로조도등급	고효율등기구 (LED 등)
2차선도로 이하	"	30~40m	8m이하	"	"
3차선도로 이하	"	30~40m	9m미만	"	"

- 가로등주는 단체표준제품과 울산광역시 및 북구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게 협의하여 선정, 또한 분전함은 북구의 관리시스템에 맞는 CDMA(무선 양방향) 자동점멸기를 설치하시기 바람.
- 관리이관 시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개별등주를 점검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승인도, 공정별 사진대장, 설계서, 설치대장 제출 및 가로등 관리번호 배정 후 등주에 번호표를 부착을 하시기 바람.

- 특히 가로등주는 개별 방수형누전차단기 설치 및 개별접지와 연속접지를 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기준에서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북구 공원녹지과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로수 분야]

- 수종은 대상지 주변의 가로수 수종을 감안하고, 울산광역시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이팝나무를 식재
- 도로 쪽으로 식재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식재하여야 하나, 도로사정상 불가하면 자전거 도로와 인도 사이에 식재 검토
- 가로수 식재간격은 8미터로 하고 규격이 일정하고 수형이 좋은 수목을 식재하고, 가로수의 정상적인 활착을 위해 봄철 또는 가을철에 수목식재
- 가로수 뿌리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보호틀의 직경이 최소 1,200mm 이상이 되도록 확보
- 가로수 보호판은 효과적인 가로수 생육을 위해 가뭄 시 물 절약 기능이 있는 보호판 설치 등 검토
- 주변 자전거 도로, 지하시설물에 가로수 뿌리 침투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가로수용 방근시트 설치 등 예방조치 검토
- 식재 전 식재지 토양을 개량토로 환토하여 가로수 식재환경 정비, 식재 시 충분한 양질의 유기질비료 투입
- 가로수 식재 전 수목 검수 및 보호틀 설치 관련 협의, 관리이관 시 하자보증증권서 제출
- 그밖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맞게 조성

[산지전용 분야] : 아래 산지전용 협의조건 참고

11. 북구 교통행정과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대로3-42 및 중로2-549호선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을 알리는 통합표지판 추가 설치 필요
- 아파트 진·출입로 및 급커브 구간 등에 반사경 설치 검토 필요
- 제한 속도 30km 노면표시는 시인성이 좋은 자착식으로 설치 필요.
- 대로3-38호선 주요 교차로 주변에 CCTV(과속·신호단속, 방법용 등) 설치 검토 필요.
- 대로3-38호선 횡단보도 주변으로 교통안전표지판(어린이보호구역) 설치 필요
- 대로3-42호선에 식재되는 수벽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웬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 식재간격 및 규격으로 검토 또는 안전웬스 설치 검토 필요
- 사업 준공 전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또는 변경 시 고원식횡단보도, 안전웬스 등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검토 필요

11. 복구 문화체육과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조사 시 유적 확인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사에 상당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상대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관계전문가가 제시한 시굴조사 지역(2,381㎡)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의 문화재와 그 주변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2. 복구 민원지적과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3조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10,000㎡이상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은 토지개발사업(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이며,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의 신고대상임.
- ※ 반드시 지적확정측량 이행 후 준공인가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13. 복구 총무과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구역외 사업(대로3-38호선)구간에 우리 구 소유의 지장물 등이 있어 향후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 착공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유상매입) 대상임.

14. 복구 환경미화과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기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시행한 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건설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및 벌채·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 등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므로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기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시행한 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 공사기간 내 투입되는 각종 건설장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월 평균 50kg이상의 폐유를 발생하는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 기존 “지정폐기물배출자신고”를 시행한 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처리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사업장 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하여야 함.

15. 복구 환경위생과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공사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지반조성 공사,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토목공사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대상이므로 해당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에 신고하여야 함.

○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계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표9]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 (굴삭기, 발전기, 콘크리트 펌프 등)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역(공동주택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등)에서 시행되는 공사 등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므로 해당 공사 시행 전에 신고하여야 함.

-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관계법에서 규정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시간대별 공사장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금회 도로개설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도로)소음·진동을 예측하여 기존 시설인 공동주택 및 학교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음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향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교통(도로)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토사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하천이나 호소 등에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류, 유독물, 농약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강우 시 공사를 자제하고 절·성토면은 덮개를 덮어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 사업시행 중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하여야 함.

16. 상수도 사업본부(북부사업소)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산동 53-1, 53-5 일원에 배수관로(D200mm)가 매설되어 있으므로 향후 인근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대3-42호선에 D200mm, 중 2-549호선은 D150mm의 배수관로를 설치하고 매곡동 485-9 일원의 배수관로(D150mm)와 연결 바람
- 공사 구간에 저축되어 상수관로 이설 등이 필요한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이설하여야 하므로 이설 계획 수립 후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그 외 공사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공사 착공 전 상세 도면을 첨부하여 우리 사업소와 협의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17. 울산 중부경찰서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대로3-38호선 도로개설구간, 대로-3-42호선 도로반복개설구간, 소로2-35호선 도로확폭개설구간 보행자 무단횡단 등 방지위한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 경보등 체계 교차로는 매곡초, 매곡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등하교 하는 학생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어 어린이 등 보행자 보호위해 신호등 체계로 변경
- 사업지 준공되면 보행자 및 교통량 증가 예상되고 주변 초,중학교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위하여

효성해링턴아파트 정문과 매곡초등학교사거리에 각 2개 방향씩 교통단속(다기능) 카메라 설치

- 보행통로 및 보행동선을 고려한 평면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설치 및 고원식횡단보도 추가 설치
-소로2-35호선, 대로3-24호선, 효성해링턴 105동 앞, 매곡중삼거리
- 효성해링턴 105동 앞 교차로와 매곡중교차로의 차로운행을 진행 동선과 진입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
- 효성해링턴 정문 앞 사업지 방향 좌회전 정지선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조정
- 사업지 주변 도로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우려 있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시설물 설치
- 사업지 주변 도로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보행자 통행이 잦아 보행자 사고 예방위하여 사업지 주변 도로(어린이보호구역 제외) 생활보호구역 지정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이에 준하는 시설물 설치
- 사업지 시공에 따른 공사 관계차량 잦은 통행으로 노면이 많이 지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재 도색 요청 시 도색(윤착식)요하며, 준공 전 사업지 주변 전 구간 도로 재 도색(우천형 스프레이식) 요함.
- 현 도면은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전문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아 위 내용 반영된 도면으로 교통전문기관 (도로교통공단 등) 등에 기술검토 받은 후 재협의요함.
-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추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상정할 것.

산지전용 협의조건

1. 사업시행 시 공사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기 표시된 경계가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허가구역 내에서만 목적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경계 침범 등으로 불법산지전용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위반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조사되지 않은 무연분묘 및 사업계획부지 경계로부터 5m이내의 분묘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시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100% 감면되었습니다.
4.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산지복구비는 면제되었습니다.
5. 산지전용허가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 31일이며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10일전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 연장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시 산지전용협의 효력 상실)
6.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협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7. 「산지관리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 전, 복구공사 착수 전에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산지전용한 지역 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 완료 전에 복구의무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복구를 완료한 후 산지관리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복구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시행 시 인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시행 중 민원발생 시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즉시 해결하고 결과를 통보 후 공사 시행하여야 합니다.
11. 타법에 의한 인·허가 등은 개별법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득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여야 하고, 산지전용의 효력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승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 출 근 거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금액

- 관련조문 : 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5조의2 및 별표 5
- 감면여부 및 사유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100% 감면
- 산출내역 :
- 산 출 액 :

2. 산지복구비 예치금액

- 관련조문 : 법 제38조, 시행령 제46조, 시행규칙 제37조 내지 제40조
- 예치면제 및 사유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면제
- 산출내역 :
- 산 출 액 :

3. 등록면허세

-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34조, 제35조
- 산출내역 : 면제
- 부과금액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5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울동6길 59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3.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3-2	울산광역시 북구	울동6길 59	2019-03- 21	울동은 밤나무골이라 이름 지어진 것으로 현재도 울동으로 사용하여 부여함	2004-01- 05
2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461-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33길 10	2019-03- 21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 10
3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D10-5B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10길 33	2019-03- 21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 10
4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D10-4B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10길 31	2019-03- 21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 1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9-331호

소하천 점용허가기간 연장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사용 연장(변경)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내 용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 연장
점용자	(주)현대자동차
점용기간	2019. 1. 1. ~ 2023. 12. 31.

신청인	주소	소하천 점용 신청현황			
		점용 위치	번지	점용면적 (㎡)	점용목적
(주)현대자동차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700	양정동	779-2번지 외 2필지	2,040	공장부지 등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9-345호

소하천 점용허가기간 연장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사용 연장(변경)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내 용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 연장
점용자	변 상 인
점용기간	당초 : 2018. 12. 27. ~ 2019. 03. 15. (일시) 변경 : 2018. 12. 27. ~ 2019. 03. 21. (일시) 2019. 03. 22. ~ 2023. 12. 31. (영구)

신청인	주소	소하천 점용 신청현황			
		점용 위치	번지	점용면적	점용목적
변상인	울산광역시 복구 매산로 65, 112동 2305호	중산동	1159-10 외 1필지	29m ²	진출입로 개설